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

■ 보급대상
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
■ 보급기기(101종)

- 시각(49종), 지체·뇌병변(19종), 청각·언어(33종)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
- **지원내용** : 제품 가격기준 80~90% 금액 지원(개인부담 10~20%) 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% 할인
- **신청기간**: 2018년 5월 8일(화) ~ 6월 22일(금) ※ 단,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.
- 신청방법(접수처) * 신청서식 :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
 - 강원도청 정보산업과에 구비서류를 우편·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 (www.at4u.or.kr)를 통해 신청
 - ※ 우편을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(우편신청: 24266,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,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자)
 - 구비서류(필수) : 신청서 1부,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,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1부
 - ※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, 활용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·제공·활용동 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, 법정대리인동의서, 위임장 포함
 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, 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서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
 - 구비서류(선택)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,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, (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 한 경우) 주민등록등본 1부
- 결과발표: 2018. 7. 20.(금)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
 - ※ 기타 문의는 강원도청 정보산업과로 연락바랍니다.

(2 033-249-2160)

